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유광순)

- 가. 제안이유
 -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 -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)
 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○ 본 조례안은

-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, 이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,
- 안 제8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(2021. 8. 26.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2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
-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변경(5년 연장)

나. 타 법규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9. 8. ~ 9. 28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 위원”을 “위촉직 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영등포구의회”를 “구의회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 <u>영등포구의회</u>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위촉 위원</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</p>	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촉직 위원</u>----- -----</p>

기 중이라도 위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⑥ (생략)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생략)

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, 지출,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구의회-----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준용)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